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일괄폐지이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별 개별 폐지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제1조)

과거 호주제 및 호적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8.1.1. 시행) 및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1.1. 시행)이 제정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법령에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성주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안 제2조)

성주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임야를 인근의 산림계에 위탁·관리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에서 산림계가 폐지되어 수십년간 유명무실한 조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다.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안 제3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설치근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라.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마. 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7.3.28.)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바.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안 제6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1990.1.13.)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최근 6년간 집행실적도 저조하여 남은채권과 회계별 잔액을 일반회계에 귀속처리할 예정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2017.12.21. ~ 2018.1.10.)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성주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하여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제1조(「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성주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의 폐지) 성주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폐지)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6조(「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폐지)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성주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3조(성주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성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성주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